

寫眞著作權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

韓勝憲

한국 저작권 연구소장 · 변호사

외국 잡지에 실린 사진을 보면, 그 밑에 사진 설명 외에 사람이나 회사 이름이 조그만 활자로 찍혀 있다. 이것은 그 사진의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표시이다. 사진마다 그런 권리자 표시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새삼스럽게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한 사진작가는 자기 작품을 무단으로 트리밍하여 합성사진을 만든 사람을 상대로 16년동안이나 법정싸움을 벌였다. 금년 여름에 결국 화해로 끝났다. 이 모두가 사진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주는 실례들임에 틀림없다.

원래 사진은 광학기계의 操作에서 얻어지는 산물이므로 창작성을 전제로 한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과연, 일반 저작물에 비하여 사진은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이용하여 피사체를 필름으로 재현하는 만큼,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정신적 창작성이 약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 장의 사진이 완성될 때까지는 主題의 선정, 피사체의 선택, 카메라 앵글·광량·셔터 찬스 등의 결정 등에 활용사의 독자적인 창의와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사진도 하나의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다.

즉 저작물의 예시규정(저작권법 제4조)에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모든 사진이 다 사진저작물이며 저작권의 보호대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서독의 저작권법은 사진저작물과 저작물이 아닌 사진을 구별하고 있으며, 프랑스 저작권법은 ‘미술적 또는 기록적 성질의 사진’을 저작물성을 갖는 사진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명문이 없으나 단순한

복제수단에 지나지 않는 사진까지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일본 문화청은 “기계의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피사체를 충실히 再製함을 목적으로 한 繪畫의 복제사진은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니까 같은 복제사진이라 하더라도 입체미술품(조각이나 건축물 따위)을 찍은 사진은 거기에 정신적 창작성이 가해졌다면 저작물로 본다는 뜻인데, 양자 사이의 한계는 명확하지가 않다.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일반 저작물의 보호기간과 마찬가지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이 끝나는 때까지이다. 개정 전의 (구)저작권법은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을 ‘공표 후 10년간’으로 짧게 잡아 차별을 했으나 지난번 법의 개정으로 이처럼 格上을 하게 되었다. 일본 저작권법도 아직 ‘공표 후 50년 주의’에 머물고 있음에 비하면 대단한 연장이라 하겠다. 이 기회에, 사진저작물에 특이한 몇 가지 조항을 풀이해 본다.

사진저작물의 저작자는 展示權을 갖는다.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과 사진저작물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터에(법 제4조 제1항 4호·6호) 미술저작물 등을 전시할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음으로(법 제19조), 사진저작물의 저작자는 전시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진저작물의 성질상 전시권에 있어서 미술저작물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法文에도 ‘미술저작물 등’이라고 했으니 ‘등’ 속에 사진저

작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저작자에게 전시권이 있다는 말은 저작자 이외의 사람은 저작자의 승락이 없이 함부로 사진저작물의 전시를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럼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을 양도받은 소유자도 전시권이 없는가.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는 명문이 있다(법 제32조 제1항). 그러나 사진저작물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그러나 사진소유자의 전시권에 있어서도 그림과 사진을 구별할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해석상으로 불합리를 시정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위의 조문의 ‘미술저작물 등’의 ‘등’ 속에는 사진저작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의 소유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전시권을 갖는다고 하겠다. 사진의 원작품을 남에게 넘겨준 뒤에도 그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남아있으며 위와 같은 특별규정에 의해서 비로소 전시권만 사진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시권을 갖게 되었다고 해도 마음대로 복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진저작물을 전시하는 자가 그 관람자를 위한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형태의 책자에만 이를 복제·배포할 수 있을 뿐이다(법 제32조 제3항). 또한 촉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을 촉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전시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위 제4항).

그러므로 해설이나 소개의 범위를 넘어서 호화로운 책자를 만든다거나 그림엽서 또는 한 장짜리 복제사진을 제작·배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저작물 속에 삽입된 사진의 저작권은 구법과 신법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즉, 구법에 의하면 학문적·예술적 저작물 중에 삽입된 사진으로서 특히 그 저작물을 위하여 저작하였거나 저작시켰을 때에는 그 사진의 저작권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속하고 그 저작물과 같은 기간 보호된다고 하였다.(구 저작권법 제36조)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은 그런 삽입 사진의 저작권에 대한 특칙을 삭제함으로써 사진저작자를 보호하고 있다. 다만 구법시대에 창작된 삽입사진은 신법에서도 여전히 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촉탁사진 역시 구법하에서는 그 저작권이 촉탁자에 속한다고 되어 있었다.(구 저작권법 제13조) 그러나 개정법은 그런 기형적인 규정을 없앰으로써 사진저작자의 권리가 크게 신장시켰다.

보도사진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법 제7조 5호)로 보아 자유이용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많은 듯한데, 그렇지 않다. 보도사진이 사실의 기록에 중점을 두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피사체에 대한 앵글이나 셔터 찬스 등의 선택·결정에 창의성이 발휘되는 수가 많으므로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요컨대 대부분의 사진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출판에 이용하거나 그밖의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 장의 사진이 완성될 때까지는
촬영자의 독자적인 창의와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사진도 하나의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다.

자녀는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기르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 미래를 위한 자녀 양육서

1 영아기 – 이렇게 기른다
(유아지도 핸드북 I)

2 세살부터 이렇게 이끈다
(유아지도 핸드북 II)

3 첫아기 2년간

4 스트레스 받는 우리의 아이들
이현순/ 3,000원

5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김태련·방희정/ 3,000원

6 아동기를 위한 성교육

7 청소년기를 위한 성교육
조성자/ 2,000원

8 첫돌박이 우리 아기

이은화·임희옥/ 3,200원

9 자녀 문제 대답해 드립니다

장희숙/ 근간

* 교사와 부모를 위한 유아지도교실

1 자신있는 아이로 키워라

김재은·장명숙/ 2,000원

2 父母教育프로그램 探索

한국교육학회유아
교육연구회편/ 2,200원

3 아버지의 역할

황용연·장희숙/ 2,000원

4 단주나라의 아침

최자영/ 2,000원

5 공부못하는 애들 ?

김재은·장명숙/ 2,000원

6 유아기를 위한 성교육

조성자/ 2,000원

DESIGN for ENGLISH INTERPRETATION

영문 해석 디자인

디자인과 영문해석 ?

영문의 구조적 이해를 위한 변환법을 통해서 영어는 정복된다
박정국지음/四六倍版/ 768면/ 8,800원

CONTEMPORARY VOCABULARY

어휘력의 기초가 부족한 분을 위한

무려 581항목의 유사어휘 수록

소영미역음/四六倍版/ 874면/ 9,500원



도서출판 창지사 735 - 3858
739 - 7704